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3. 6.(수) 16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6 의결사항

- 가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㈜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등 35개사
 - (2012-11-051)
-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제17조에 의거, '12.3.31 ~ '12.4.7일 중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㈜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등 35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
- o 주요 내용
 - ① 재허가 기간 : ㈜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등 35개사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
 - ② 재허가 조건

사업자명	재허가 조건 내용		
공통(35개사)	 ○ 디지털전환율(당해년도 6월말 기준)에 따라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~28%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. ─ 디지털전환율 10%미만: PP프로그램사용료 25% 이상 지급 ─ 디지털전환율 10%이상~30%미만: PP프로그램사용료 26% 이상 지급 ─ 디지털전환율 30%이상~50%미만: PP프로그램사용료 27% 이상 지급 ─ 디지털전환율 50%이상: PP프로그램사용료 28%이상 지급 		
	 위 기준 적용 결과, 2012년과 2013년의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(유료 채널과 유료, 무료VOD 제외) 인상율이 전년대비 각각 5%, 2.5% 미만일 경우, 5%이상, 2.5% 이상 확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기본채널과 무료VOD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이 기본채널 수신료 수익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		
	매 반기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	
	 재허가 신청시 제출된 디지털전환 관련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한다. 		
공통(MSO 계열 31개사)*	특수관계에 있는 계열PP와 그러하지 아니한 PP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.		
씨앤앰 계열 (강남, 경기동부 제외 10개사)	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 이행하고, 그 이행경과를 매년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		
씨제이헬로비전 ㈜경남방송	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미제공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그 이행경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		
㈜씨엠비광주방송, ㈜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	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개정 전까지, '광주광역시동구 등4개자치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규정'(대통령령 제23080호) 시행 전의 관할구역에 따른 방송구역을 유지하여야 한다.		
㈜씨엠비 한강케이블티비	 주주, 방송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해소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재허가 이후에도 주주, 방송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 자에 대한 대여, 담보, 지급보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		
남인천방송㈜	 사외이사 선임 및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합병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획서를 이행하고 매년 그 이행경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 		

㈜강원방송

 전송망 관리방안 등 이용자 보호계획과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이행하고 매년 그 이행경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 MSO계열 31개사

- 티브로드(9): ㈜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, ㈜티브로드낙동방송, ㈜티브로드남동방송, ㈜티브로드 동남방송, ㈜티브로드동대문방송, ㈜티브로드새롬방송, ㈜티브로드서부산방송, ㈜티브로드 서해방송, ㈜티브로드전주방송
- 씨앤앰(12): ㈜씨앤앰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노원케이블티브이, 씨앤앰동서울케이블 티브이, ㈜씨앤앰마포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북부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서서울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용산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송파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중랑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중앙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
- 씨제이헬로비전(5):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㈜, 씨제이헬로비전㈜북인천방송, 씨제이헬로비전㈜경남방송, 씨제이헬로비전㈜중부산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
- 현대에이치씨엔(3) : ㈜현대에이치씨엔동작방송, ㈜현대에이치씨엔서초방송, ㈜현대에이치씨엔 부산방송
- 씨엠비(2) : ㈜씨엠비광주방송, ㈜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

나. 이용약관 변경신고 위반 방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(2012-11-052)
-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이용약관 변경신고 내용과 다르게 방송채널을 변경하여 송출한 ㈜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원안 대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
o 주요내용

< 행정처분 내용 >

법인명	위반내용	부과금액	처분내용
㈜아름방송	이용약관 변경신고와 다르게 방송채널을	500만원	과태료
네트워크	임의로 변경하여 송출		

7 보고사항

가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요건·소유제한,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,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- o 주요내용
- ①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·변경허가·허가취소 등(안 제2조~제7조, 별표1)
 - (허가) 허가신청서류, 허가증발급,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 등 세부절차 규정

- (변경허가 등) 합병·사업양도 시 변경허가신청서류, 최다액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, 변경허가증 발급 등 세부절차 규정
- (허가취소) 업무정지기간의 가중·감경사유, 위반사항별 처분기준, 허가취소· 업무정지 시 대체 광고판매자 지정 등 세부 기준과 절차 규정
- ②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(안 제8조, 제9조)
 - (특수관계자) 배우자, 친·인척, 임원, 계열사 등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(30/100이상 출자 등) 또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
 - (기업집단)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
- ③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(안 제11조)
 - (수탁수수료)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 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의 범위로 규정
 - (대행수수료)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5이내로 규정
- ④ 금지행위 세부유형(안 제10조, 별표2)
 - (광고판매대행사)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, 광고판매 거부·중단· 해태, 차별 취급, 수수료 미지급, 회계기준 위반,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정
 - (방송사업자) 경영간섭, 거래거절, 차별취급, 수수료 미지급 등 규정
- ⑤ 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(안 제12조)
 - 지정을 요청한 중소방송사의 성격·광고매출 규모,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
- ⑥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13조)
 - 위원회 소집, 의결방식, 결원 시 보궐위원 선임방법, 분과위 설치 등을 규정
- ⑦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등기 등(안 제14조 등)
 - 설립등기, 이전등기, 변경등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- ⑧ 기타 법 위임사항 구체화(안 제2조, 제20조~제23조)
 - 의무위탁의 예외 방송광고로서 국가·지자체의 광고 등
 -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사업범위 등
 - 과징금·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규정

o 향후 일정

관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: '12년 3월

- 위원회 의결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'12년 4월

- 법제처 심사 : '12년 5월

- 차관·국무회의 : '12년 5월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차기 회의 개최일시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함

6. 폐 회 (16:35)